

- ⑤ 학위증, 학위증명서, 성적증명서 양식은 당해 대학 학칙을 따르되, '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학칙 제O조의 규정에 의한' 학위임을 반드시 명시해야 함.  
※대학에서 발급 가능한 증명서는 학위증, 학위증명서, 성적증명서에 한함.  
(졸업증명서, 학위수여예정증명서, 재학증명서 등 발급 불가)